

##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

[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-14호, 제정]
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.

1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2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
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
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
6.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7.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
8.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

부 칙 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14호, 2014. 4. 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 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.